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
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 20.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 13. 마포구
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4. 1. 14.

다. 상정일자 : 제21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4.
1. 2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이영
목)

가. 제안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
정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구청장으로 권한위
임 범위가 확대되는 서울특별시 행정권
한 위임조례가 1993. 9. 25일자로 서울
특별시조례 제30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동조례를 전면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태료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의 범위확
대 (안 제2조)
-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
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정상을 참작하
여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독촉절차 및 체납처분규정(안 제5조, 제
6조)
- 과태료 부과기준을 5개 사항 구분, 10
개 세항목으로 설정함.(안 제3조제1항
별표)
-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의 절
차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1) 동 조례안 제4조 "과태료의 처분등"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통
지서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에너
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동 통지서를 송부하기전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
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
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불이익한 처분
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
어야 할 것임.

2) 동 조례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서 "1. 에너지 사용자"란 가호 중 당해
년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
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년도의 에너지 사
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으로 수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연우 위원) : 에너지 사용자의
범위는 ?
- 답변요지(산업과장 이영목) : 유류, 가스,
전기를 포함하여 열관리 대상은 연간
500톤 이상, 전기관리 대상은 연간 200만
kwh 이상이며, 관내 다량사용업자는 26개
업체가 있음.
- 질의요지(정연우 위원) : 과태료가 상향 조
정된 것은 없는가 ?
- 답변요지(산업과장 이영목) : 없음
- 질의요지(이봉형 위원) : 조례에 의한 과태
료 부과 실적은 ?
- 답변요지(산업과장 이영목) : 91년 제정되어
각구 공히 실적이 없음. 작년에는 경고조
치만 하였음.
- 질의요지(이봉형 위원) : 조례를 활용치 않
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
- 답변요지(산업과장 이영목) : 금년부터는 적
극 운영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 20. 홍성
환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때 그 처

본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 골자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줌.(안 제4조 제2항)

- 별표중 불합치되는 부분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	제출일자 : 1994년 1월 13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	--------------------------------------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사항에 관하여 과태료부과징수사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서울특별시상으로부터 자치구청장으로 권한위임범위가 확대되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1993. 9. 25일자로 서울특별시조례 제30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동조례를 전면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가. 과태료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정상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독촉절차 및 체납처분규정(안, 제5, 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5개사항구분, 10개 세

항목으로 설정함(안, 제3조제1항 별표) 마.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의 절차 규정(안, 제7조)

3. 개정근거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93. 3. 6. 법률제4541호)제84조, 제92조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93. 8. 4. 대통령령 제13948호) 제47조, 제50조

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93. 9. 25. 조례제3027호)

라. 연료57101-143(93. 9. 7.), 연료57121-1002(93. 9. 2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예산조치 불필요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1부.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사본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부과대상) ② 에너지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신고등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에너지관리자 채용신고등 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

너지사용량을 기록하는 등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열사용기자재제조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제조업의 휴업, 폐업신고등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등 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③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시공업의 휴업, 폐업 신고 등 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을 완료한 경우 그 설치, 시공기록을 작성하는등 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 해임한 경우 그 신고를 하는 등 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검사대상기기의 운전, 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법 제47조제3항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⑤ 냉·난방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건축물을 전부 또는 구역별로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해당구역의 건축물 관리를 맡고 있을 때에는 그 임차인)로서 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안의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제3조(부과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규정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과태료는 납입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20일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준용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조사, 확인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만원)

구 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과 태 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1. 에너지 사용자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	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당해 년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20조 제1항	20	50	100	300
	나. 에너지관리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23조 제2항	30	70	150	300
	다. 에너지 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설치 및 개폐상황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21조	20	50	100	300
2.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자	가.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35조	20	50	100	300
	나.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7조 제1항	20	50	100	300
3.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가. 시공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46조 제2항	20	50	100	300
	나.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을 완료한 경우 그설치,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사항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2조 제2항	20	50	100	300
4. 검사 대상기기 설치사	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 해임, 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법 제49조 제3항	30	70	150	300
	나. 정기적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운전, 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7조 제3항	20	50	100	300

구 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위반온도(°C)	과 태 료			비 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5.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자	건축물 안의 냉·난방 온도의 제한 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1항	1	60	120	180	
			2	70	140	210	
			3	80	160	240	
			4	90	180	270	
			5	100	200	300	

- ※ 1) 과태료 부과횟수의 산정: 1회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2회 위반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횟수의 누증계산을 한다.
 2) 위반행위의 경합: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 통지서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제 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마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12
마포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위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제 항 제 호	
금 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축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위의 금액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 입 일부인	
19		
마 포 구 청 장 (인)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통지서(1)

12
마포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위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제 항 제 호	
금 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수 입 일부인	
은행 지점(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		

(구정보관용)

영 수 종

12
마포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위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제 항 제 호	
금 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수 입 일부인	
은행 지점(인)		

(별지 제4호 서식)

독촉통지서

12
마포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위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제 항 제 호	
금 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축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수 입 일부인	
	19	
마 포 구 청 장 (인)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통지서(1)

12
마포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위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제 항 제 호	
금 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수 입 일부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		

(구청보관용)

영 수 증

12
마포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위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 제 항 제 호	
금 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수 입 일부인
은 행 지점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자명				
사무소	허가(지정)번호		상호(건물명)	
	소재지			
과태료 처분내용	부과관청		통지서 번호	
	통지서 수령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제 조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한 바 동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 대상자명	허가(지정)번호		상호(건물명)	
	소 재 지			
과태료 처분내용	과태료 처분		과 태 료	
	통지일자		금 액	
	부과 관청		이의제기일자	

-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마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
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4년 1월 20일
발 의 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때 그 처분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개정골자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줌(안 제4조 제2항)
- 별표중 불합치 되는 부분을 수정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
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
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에너지 사용자 위반내용 란중 “당해년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량”을 “당해년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 예정량”으로 한다.

원안대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과태료의 처분등) ① (생략) (신 설)				제4조(과태료의 처분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의 과태료는 납입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 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과태료	구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과태료
1. 에너지 사용자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	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당해년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원안과 같음)	같음	1. 에너지 사용자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	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당해년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원안과 같음)	같음
	나. (생략)				나. (원안과 같음)		
	다. (생략)				다. (원안과 같음)		